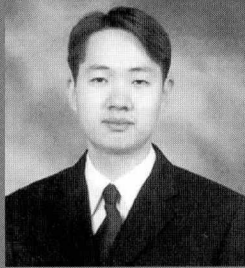


새봄을 맞아, 축산인 여러분의 사업에 큰 결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.

지난 한 해, 축산자조금은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. 특히, 축산자조금법(축산자조금의 운영 및 운용에 관한 법률)이 개정('06.12월)되었고 양돈 및 한우에 이은 낙농의무자조금의 도입('06.5월)등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렇게 축산의무자조금이 안정된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축산농가를 비롯한 생산자단체, 학계,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앞으로도 정부를 비롯한

한 연장(매달 10일까지 → 매달 20일까지) 등을 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축산자조금법이 그간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이나, 여전히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가로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

특히, 유사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, 축산 단체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부진, 축산단체장 선거 등을 감안한 선심성 사업추진 우려, 일부 도축장의 비협조 등은 축산자조금의 도약 및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입니다.



2007 축산 자조금 정책방향

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강민철

축산업계 종사자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합니다.

현재 축산자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. 그 내용을 살펴보면, 육우자조금의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의원 총수(80명)를 신설하고, 젖소(150명에서 130명), 돼지(200명에서 150명), 육계·산란계(각 150명에서 각 80명)의 대의원을 하향조정하여 자조금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대의원 선출을 위한 시장·군수의 별도 축산통계조사 의무 폐지, 시장·군수의 행정통계 보고 자료에서 사육기간 제외,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상향조정(거출금의 0.3%에서 0.5%)과 거출금 납입기

향후에는 자조금 도입 축종 확대 및 자조금 조성·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, 자조금 예산(안)에 대한 편성지침의 배포 및 세부 사업 설명서 작성을 통한 방만한 사업추진 차단, 추진사업에 대한 실적과 효과분석 등으로 효율성과 필요성 점검 및 익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, 조성된 거출금(보조제외)의 이월·적립 등 탄력적 활용 방안 강구, 자조금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강화, 자조금의 국고보조 비율 및 한도 조정 검토('07년의 경우, 품목별로 국고보조 50억원으로 한도 설정) 등을 추진하여 자조금제도의 발전에 기틀을 삼고자 합니다. 앞으로 축산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.